뉴욕시 식당위생등급 표시제
Letter Grading and Scoring

1 개요

□ 식당위생등급 표시제란?

○ 정해지지 않은 날짜에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위생기준 위반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기준으로 A, B, C 등급으로 나누어 위생등급을 정함. 위생등급표시를 식당 입구 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소비자들이 식당을 이용할 시 위생등급을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함

□ 도입 목적

○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하는 식당의 위생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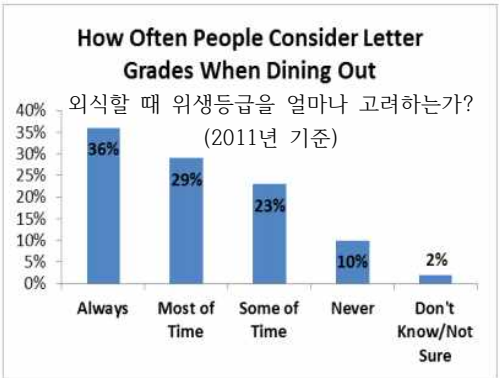
○ 위생등급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식당이 음식 준비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음식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을 감소시키기 위함

□ 도입 배경

○ 뉴욕주 SPARCS(Statewide Planning and Research Cooperative System)에 따르면 뉴욕시의 외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입원한 사례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○ 외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병의 원인이 식당위생관리 소홀에 있다고 판단하여 2010년 처음으로 식당위생등급 표시제를 도입함

○ 이전에도 식당위생 검사는 존재했지만 직접 위생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정보를 쉽게 알 수 없었음



(출처 : 뉴욕시 위생국 2011년 7월 배포자료)

○ 식당위생등급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88%가 외식 할 때 위생등급을 고려하는 것으로 들어나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좋은 위생등급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이 됨

□ 도입 대상 : 식당, 카페, 바, 나이트클럽, 대부분의 학교식당 및 회사식당, 고정식 음식 판매대

2 위생검사 및 등급측정

□ 위생검사의 종류

○ 1차 검사 (Initial Inspection) : 해당 검사주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생검사

○ 재검사 (Re-Inspection) : 1차 검사에서 A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실시하는 재검사

○ 규제검사 (Compliance Inspection) : 재검사 또는 이전 규제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 건강 법규 위반을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

□ 위생등급의 종류

○ A 등급 : 1차 검사 또는 재검사에서 위생기준 위반 점수 13점 이하를 받은 경우

○ B 등급 : 재검사에서 위생기준 위반 점수 14점 ~ 27점를 받은 경우

○ C 등급 : 재검사에서 위생기준 위반 점수 28점 이상을 받은 경우. C 등급의 경우 위생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간주됨



□ 위생기준 위반의 종류

○ 결정적 위반

- 결정적 위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작게는 5점에서 크게는 28점까지 위반 점수를 받을 수 있음

- 식중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음식 온도, 준비과정, 식자재 보관, 직원 위생 등이 이에 포함됨

- 뉴욕주 위생법에 따라 이 위반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을시 식당을 폐쇄조치 할 수 있음

○ 일반 위반 : 최소 2점의 위반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식기 및 요리 도구의 위생상태, 식당 시설 관리부족이 이에 해당함

○ 담배 관련 위반 : 담배 판매, 식당 내 흡연 관련 사항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위반 점수를 받지 않지만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

* 같은 항목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짐

* 상세 위생기준 위반 점수표 : 첨부파일 [NYC 식당위생검사 항목] 참고

□ 위생검사 주기

○ 위생검사는 사전 공지 없이 이루어지며 지난번 1차 검사 또는 재검사에서 받은 위생등급에 따라 검사주기기 달라짐

○ 지난 1차 검사 또는 재검사에서 A 등급을 받은 식당은 대략 1년 후에 다시 위생검사를 받게 되고, B 등급을 받은 식당은 150일~210일 사이에, 3등급을 받은 식당은 90일~150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됨.

3 위생등급 표시 의무

□ 1차 검사 또는 재검사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

○ 1차 검사 또는 재검사에서 13점 이하의 위반 점수를 받은 경우 위반 경고를 받지 않으며 시로부터 A등급 표시를 받아 게재해야 함

□ 재검사에서 B 등급 또는 C 등급을 받은 경우

○ 뉴욕시 위생국에서 발급한 위반경고를 받게 되며 식당은 시로부터 위반 점수에 따른 등급표시(B 또는 C)와 등급 유보 표시 두 가지 표시를 받게 됨

○ 식당은 표시를 받는 즉시 둘 중 한 가지 표시를 게재해야하며 등급 유보표시를 게재한 경우 행정재판소에 등급 변경을 주장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등급 유보 표시를 게재할 수 있음

○ 행정재판소에서 위생등급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식당은 곧 바로 재검사에서 부여받은 등급표시를 게재해야함

○ 행정재판소 청문회 날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회 일시를 기준으로 재검사에서 부여받은 등급표시를 게재해야함

○ 행정재판소가 등급을 바꿔줄 경우 새로운 등급표시를 발급 받아 곧바로 게재해야함

□ 위생등급 표시 방법

○ 눈에 잘 띄는 식당 입구, 앞 유리, 외벽 등에 설치해야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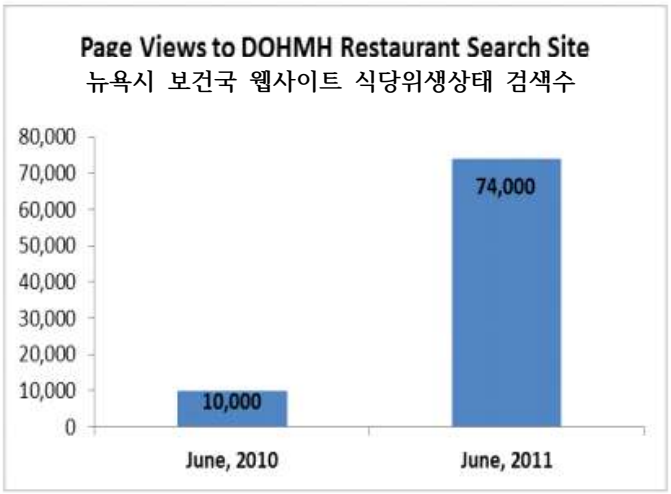
○ 식당 입구 또는 길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1.5미터 안에 설치해야함

○ 1.2미터 ~ 1.8미터 높이에 설치해야 함

○ 직접적 입구가 없는 식당의 경우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생 검사원이 이에 대한 기준선을 제안해 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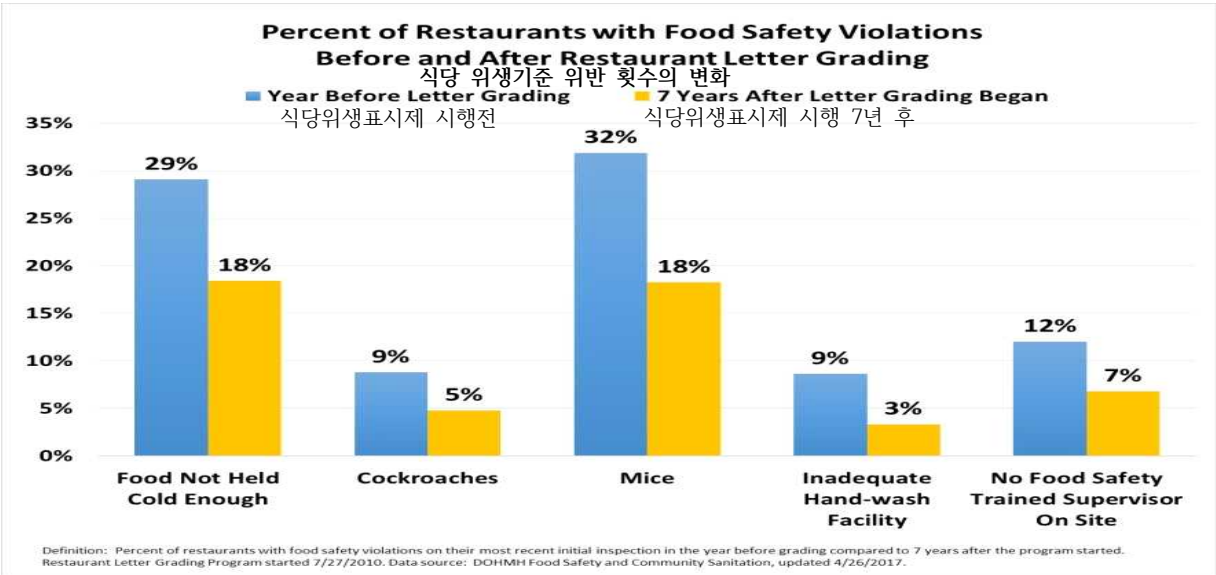
4 성과

□ 식당위생에 대한 인식 고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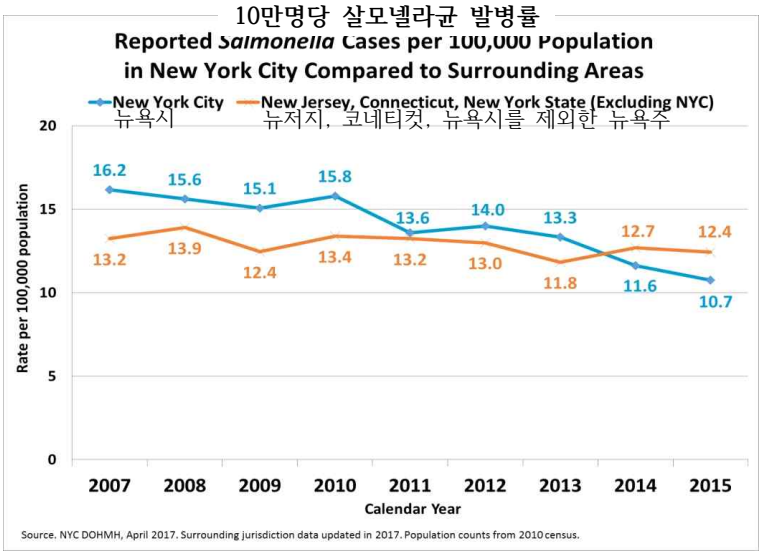
- 뉴욕시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식당 위생상태 검색수가 식당 위생등급 표시제 실시 1년 후 7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식당 위생등급 표시제가 식당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

□ 식당 위생 수준 향상



- 식당위생표시제 시행 전과 시행 7년 후의 위생 기준 위반 횟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위의 그래프와 같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음. 특히 뉴욕시의 고질적 문제인 바퀴벌레 관련 위반사항에 경우 시행 전 9%에서 시행 7년 후 5%로, 쥐 관련 위반사항은 32%에서 18%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음

□ 살모넬라균 발병률 감소



- 식당위생등급 표시제 시행 후 뉴욕시민 10만명당 살모넬라균 발병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욕시 인근 지역의 경우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

□ 2011년 7월 1차 검사에서 A 등급을 받은 식당이 전체 식당의 35%에 불과했던 반면 2017년 5월에는 1차 검사에 A 등급을 받은 식당이 62%로 늘어남

5 시사점

□ 뉴욕시의 식당위생등급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업계의 특징을 적절히 이용한 제도임. 정책 시행당시 본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많은 시민들이 초기 단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점이 인상적임

□ 뉴욕시 특유의 적극적인 정책이 잘 정착되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음

□ 한국 지자체에서 이 정책을 적용할 때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반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